##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563

발의연월일: 2024. 10. 4.

발 의 자:주호영·고동진·김상훈

최은석 · 김기웅 · 김종양

이인선 · 김예지 · 권영세

이헌승 · 김재섭 · 김도읍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림보호구역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어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생활환경·경관의 보호, 수원(水源)의함양과 수질관리, 재해의 방지 또는 산림유전자원의 보전·증진 등을위하여 특별히 산림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면 해당 산림을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유림이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산림 소유자는 입목· 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 또는 가축의 방목이 금지되고 토지의 형상 변경도 할 수 없는 등의 해당 산림에서 경영 활동이 제한을 받 게 되므로, 산림의 공익가치 창출에 기여한 산주에게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산림경영이 가능한 임업용산지는 임업생산을 통해 수익이 발생하고 소득보전을 위한 임업직불금이 지급되지만 공익을 위해 지정

된 산림보호구역은 임업생산도 할 수 없고 임업직불금도 받지 못하는 이중적 차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며,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단위면적당 금액 산정시 산림이 가지는 수원함양(水源涵養)·대기정화·토사유출방지·온실가스 흡수 등의 공익적 가치평가액을 반영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징수하는데 산주에게 대가를 전혀 지불하지 않아 불공정하다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이에 산림의 공익기능 유지·증진을 위하여 공익규제를 받고 있는 산주 등을 대상으로 한 '산림 공익가치 보전지불제'를 도입함으로써, 산림보호구역의 안정적 유지·관리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5부 터 제10조의10까지 신설).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주호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4565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56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5부터 제10조의10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0조의5(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제도의 시행) ① 산림청장은 제9조 제1항에 따른 행위 제한을 이행한 산림보호구역이나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공익용산지로 지정된 사찰림의산지(이하 "사찰림"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산림의 공익기능 유지· 증진에 기여한 산림보호구역 또는 사찰림의 소유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제도(이하 "산림보전지불제"라 한다)를 시행할 수 있다.
  -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내 사유림 또는 사찰림소유자에게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징수액을 재원으로 하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8조제4항제2호에 따라 녹색자금으로 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금(이하 "산림보전지불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상수원관리지역 안의 산림보호구역은 한강수계관리기금·금강수계 관리기금·낙동강수계관리기금·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으로 각각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의6(산림보전지불금의 지급대상지) 산림보전지불금의 지급대상 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호에 따른 사 유림 중에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림보호구역
  - 2.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용 산지 중 사찰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
- 제10조의7(산림보전지불금의 지급대상자) ① 산림보전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자는 제10조의5제1항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또는 사찰림의 소유자로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산림보전지불금의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
  - 1. 산림보호구역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경우
  - 2. 산림보호구역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급상한면적을 초 과한 경우(산림보전지불금의 지급은 지급상한면적에 한정한다)
  - 3. 제2호의 지급상한면적을 초과하는 면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수(讓受)하거나 분할 또는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경우
- 제10조의8(산림보전지불금의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산림보전지불금을

지급 받으려는 자는 산림보호구역 및 사찰림을 대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 제10조의9(산림보전지불금의 지급 등) ① 산림보전지불금을 지급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산림보전지불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림 보전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 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림보전지불금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 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림보전지불금을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 2. 제10조의8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3.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산림보전지불금의 지급을 신청한 경우
  - ③ 산림보전지불금의 산정, 지급방법 등 그 밖에 산림보전지불금의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의10(산림보전지불금의 환수) ① 제10조의9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림보전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된 경우에는 지급된 산림 보전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산림보전지불금의 환수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lt;신 설&gt;</u>	제10조의5(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제도의 시행) ① 산림청장
	은 제9조제1항에 따른 행위 제
	한을 이행한 산림보호구역이나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
	호나목에 따른 공익용산지로
	지정된 사찰림의 산지(이하
	"사찰림"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산림의 공익기능 유지·증진에
	기여한 산림보호구역 또는 사
	찰림의 소유자를 지원하기 위
	하여 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
	제도(이하 "산림보전지불제"라
	한다)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내 사유림 또는
	사찰림 소유자에게 「산지관리
	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
	자원조성비 징수액을 재원으로
	하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
	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4항
	제2호에 따라 녹색자금으로 산
	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금(이하

"산림보전지불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에 등에 관한 법률」,「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상수원관리지역 안의 산림보호구역은한강수계관리기금・금강수계관리기금・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으로 각각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의6(산림보전지불금의 지급대상지) 산림보전지불금의 지급대상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호에 따른 사유림 중에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림보호구역 2.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용 산지 중

<신 설>

<신 설>

<u>사찰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u> 는 산지

제10조의7(산림보전지불금의 지급대상자) ① 산림보전지불금의 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자는 제10조의5제1항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또는 사찰림의 소유자로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산림보전지불금의 지급 대상자가 될 수 없다.
- 1. 산림보호구역의 면적이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경우
- 2. 산림보호구역의 면적이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지급상한면 적을 초과한 경우(산림보전지 불금의 지급은 지급상한면적 에 한정한다)
- 3. 제2호의 지급상한면적을 초 과하는 면적의 일부 또는 전 부를 양수(讓受)하거나 분할 또는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경 우

제10조의8(산림보전지불금의 수령

<신 설>

<신 설>

을 위한 준수사항) 산림보전지 불금을 지급 받으려는 자는 산 림보호구역 및 사찰림을 대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의 형상 및 기능을 유 지하여야 한다.

제10조의9(산림보전지불금의 지급 등) ① 산림보전지불금을 지급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 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산림 청장에게 산림보전지불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산림보전지불금의 전부 또 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림보전지불금 전부 를 지급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산림보전지불금을 신

   청 또는 수령한 경우
- 2. 제10조의8에 따른 의무를 이 행하지 아니한 경우
- 3.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사

실과 다르게 산림보전지불금 의 지급을 신청한 경우 ③ 산림보전지불금의 산정, 지 급방법 등 그 밖에 산림보전지 불금의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0조의10(산림보전지불금의 환 수) ① 제10조의9제2항에도 불 구하고 산림보전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된 경우에는 지급된 산림보전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산림보전지불 금의 환수에 필요한 사항은 농 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